

부록 D: 원고 측 종결 적요서 견본

Bill X

세부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신하는 원고의 아버지 **Bill X**

미국 캘리포니아주

청문행정처

해당 사안의 주체: 판례 # 2015000000

SALLY X, 원고의 청문 적요서

원고

대

지역 센터,

서비스 기관

일자: 2015-09-12

시간: 오전 10:00

장소: Regional Center, 5555 Road St., City, CA 90000

I. 문제점

Sally X가 학제를 통해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 상담 서비스 재정을 지역 센터에서 계속 공급해야 할지 여부.

II. 소개

Sally X 는 지역 센터의 수요자로서 14 세의 미성년자이며 특수교육학생입니다. Sally 는 뇌성마비 장애인이며 2015 년 8 월에 척추골 융합술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속한 교육구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데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들 때문에 Sally 와 그녀의 가족은 교육 상담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큰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2010 년 1 월, Donald Cole 행정법 판사는 청문회가 끝난 후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분투하는 Sally 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려면 Sally 에게 교육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고 판단했습니다. Sally 가 필요한 언어 치료를 받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돌봄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면 IEP 미팅에서 Sally 를 대변하고 그녀가 속한 교육구의 IEP 진행 경과를 모니터하며 그녀의 가족에게 조언을 제공할 담당자로서 지역 센터(RC)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 상담 전문가의 도움은 Sally 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III. 논점

A. 지역 센터는 SALLY 의 IPP 에서 확인된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해 SALLY 에게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는 모든 지역 센터 수요자를 대상으로 개인 프로그램 계획(IPP)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서는 수요자 개인과 그 가족의 요구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WIC) 제 4646 조. IPP 의 제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센터는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WIC) 제 4648 조(a)항. IPP 에 의거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들은 “변호 지원”을 포함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WIC) 제 4512 조(b)항.

Sally X 의 가장 최근 지역 센터 IPP(2015 년 8 월 27 일)에서는 Sally X 의 가족이 그녀의 교육구에서 처리했으면 하는 그녀의 요구들을 각 영역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Sally의 IPP에 따르면 그녀는 보행 능력이 없으며 두 팔의 기능적인 운동 범위는 제한되어 있는데다 모든 자조 활동(self-care)에서 신체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변비, 호흡곤란 및 발작 병력 등의 건강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Sally의 IPP에서는 Sally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IPP는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Sally 자신이 본인의 신체를 조절하면서 두 손을 사용해 직접 식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녀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언어 치료와 특수 체육 교육을 활용합니다. Sally의 IPP에서 확인한 것처럼 학교는 Sally의 개인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중심점 역할을 담당하며, Sally의 가족은 적절한 학교 교육 서비스를 얻기 위해 교육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RC는 Sally를 위한 IPP 서비스로서 교육 상담 전문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B. 지역 센터는 SALLY의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일반적인 자원들을 SALLY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지역 센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교육구를 포함)을 파악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WIC) 제 4659 조(a)항(1)호.

RC는 Sally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자원으로부터 재정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Sally의 가족은 현재 Sally의 IEP에서 적절한 분량의 언어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Sally는 척추골 융합술을 받은 후 휠체어에 앉은 자세가 크게 바뀌었으며 시술을 받은 후에는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더욱 편 자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말을 할 때 호흡 조절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lly의 현재 교육구는 그녀의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녀의 언어 치료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없애려고 합니다. Sally의 교육 상담 전문가는 Sally가 언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녀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Sally가 학교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지역 센터에 서비스를 요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RC는

교육 상담 전문가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통해 학교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언어 치료의 일반적인 자원을 Sally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ally는 자기 자신을 돌볼만큼 건강하지 않은데다 신체 능력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녀의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그녀가 학교에서 원하는 돌봄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돌봄이 없다면 Sally는 학교에 출석할 수조차도 없을 것이며, 취약 연령대의 지역 센터 수요자에 대한 주요 서비스 공급원을 눈 앞에 두고도 놓치고 말 것입니다. Sally의 교육구는 그녀의 신체적 요구들을 충족하지 못해 그녀의 건강을 위태롭게 만든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정확한 서비스를 Sally의 IEP에 반영하고 이 IEP를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하려면 Sally의 교육 상담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C. 지역 센터는 SALLY가 그녀의 교육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 상담 서비스 재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원칙적으로 “3~17세의 미성년자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며, 다만 “이러한 교육 서비스가 수요자의 발달 장애에 따른 신체적, 인지적 또는 정신사회적 영향들을 개선하기 위한 1차적 수단 내지 주요 수단에 속할 경우 혹은 수요자의 가정에서 수요자가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가 꼭 필요하며 수요자의 제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적인 서비스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 서비스의 비용을 예외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WIC) 제 4648의 5조(a)항(3)호 및 (c)항.

RC는 WIC 제 4648의 5조에 의거해 Sally가 이용하는 교육 상담 서비스의 재정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제 4648의 5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RC가 교육 상담 서비스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요청된 서비스들은 종래의 관점에서 볼 때 3~17세 연령대의 미성년자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2) 요청된 서비스가 3~17세

연령대의 미성년자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Sally 는 이용 제한 면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1. SALLY 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3~17 세 연령대의 미성년자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가 아니므로 SDRC 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ally 의 가족이 요청하는 서비스는 종래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일반적인 재원을 통해 Sally 로 하여금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상담 서비스 또는 지원 제공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재정 위기에 대응하여 제정된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WIC) 제 4648 의 5 조는 일반적인 재원을 통해 수요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을 지역 센터에서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원칙을 특별히 적용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수요자들이 지역 교육구에서 교육을 대신 받아야할 때 수요자들의 교육 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역 센터에서 부담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Sally 의 가족은 해당 교육구의 업무를 수행할 다른 누군가에게 비용을 지급할 것을 RC 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Sally 가 자신이 속한 교육구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데 도움을 줄 교육 상담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Sally 의 가족이 요청한 서비스는 올바른 일반 재원을 출처로 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Sally 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제 4648 의 5 조의 제반 목적을 충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WIC) 제 4648 의 5 조는 Sally 를 위한 교육 상담 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금하지 않으며, RC 는 Sally 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일반 재원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교육 상담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SALLY 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3~17 세 연령대의 미성년자를 위한 교육 서비스에 해당되더라도 SALLY 는 이용 제한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교육 상담 서비스가 3~17 세 연령대의 미성년자를 위한 “교육 서비스”에 해당되더라도 Sally 는 서비스 유료 이용 권한 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요청한 이 서비스가 교육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데다 신체적 장애에 따른 영향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Sally의 요구를 충족할만한 대안적인 서비스가 없습니다.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센터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학교는 장애에 따른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서비스 공급원인 셈입니다. Sally의 가장 최근 IPP에서는 그녀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IPP는 Sally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녀의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IPP에서는 Sally의 언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정작 언어에 대한 “결과”는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Sally가 현재 학교에서 언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포크를 집어 스스로 식사를 하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체력을 키우기 위해 학교 체육 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결과가 IPP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Sally가 자신이 속한 교육구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사실은 Sally가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누군가 그녀의 IEP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한 것입니다. Sally의 학교는 처음엔 Sally가 접근하기 수월하도록 교내 화장실을 개조하기를 거부했으며, 다만 그녀의 교육 상담사가 개입할 때에만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Sally는 6학년 내내 장폐색 증세에 시달렸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학교 측이 (휠체어를 끌어줄만한 보조 교사 등의 인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Sally의 휠체어를 충분히 잦은 빈도로 화장실까지 끌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또한 교육 상담사가 처리해야 했습니다.

Sally가 학교 서비스를 통해 장애를 개선하려면 적어도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는 있어야 하며, 그녀의 교육 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Sally의 신체적 요구를 충족할만큼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명된 해당 교육구에서 그녀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Sally는 뇌성마비 장애에 따른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언어 치료 및 특수 체육 교육 등 교육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Sally X의 가족은 Sally가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교육구와 투쟁해야 했으며, 이러한 투쟁을 통해 비로소 교육 상담사의 도움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상담 서비스는 Sally의 장애에 따른 영향을 개선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상담 서비스에 대한 Sally의 요구를 충족할만한 대안적인 서비스 공급원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WIC) 제 4648의 5 조에서 가장 명확하게 기대하고 있는 1명의 수요자에 대한 일반적 내지는 “대안적”인 서비스 공급원은 바로 수요자의 교육구입니다. Sally의 교육구는 적절한 서비스를 그녀에게 거듭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교육 상담사의 목적은 해당 교육구로 하여금 Sally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도록 설득 또는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특수 교육 문제에서 학생들을 지지하는 여타 중재 기관들이 지역 사회에 존재하지만 정작 Sally를 위한 그 밖의 지원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Sally와 그녀의 가족은 현재 그녀를 맡고 있는 교육 상담사와 장기간에 걸쳐 업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이 상담사가 RC에서 그들에게 배정한 RC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이 상담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Sally가 지금 다른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신입 직원은 무엇보다도 Sally의 성장 배경부터 익히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비효율적인 것이며, 아무래도 해당 신입 직원은 Sally의 현재 상담사만큼이나 Sally의 요구를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중재인은 Sally가 자신의 교육구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분투했던 시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혹은 현재 Sally의 교육 상담사와 교육구의 업무 관계에 따른 이득을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Sally의 다음 번 IEP 미팅은 2015년 9월 2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Sally는 이 IEP 미팅과 이후의 모든 후속 미팅 일정에서 자신의 요구 사항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중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언어 치료를 놓고 Sally와 교육구 간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해결할

기회가 다름 아닌 **Sally** 의 현재 교육 상담사에게 있다는 사실이며 실제로 이 상담사는 이미 해당 문제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Donald Cole 행정법 판사의 2010 년 판결 내용을 보면, **Sally** 가 처한 상황이 특이하며 그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육 상담사의 지속적이면서도 일관된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Sally** 의 요구 사항은 장기적인 교육 상담사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만 충족할 수 있습니다.

IV. 결론

Sally X 는 중요한 일반 자원 즉, 교육구를 통한 특수 교육을 받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지역 센터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 상담사의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RC** 는 **Sally** 를 위한 이러한 (교육 서비스의) 일반 자원을 계속 확보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Sally** 가 이용하는 교육 상담 서비스가 3~17 세 연령대의 미성년자를 위한 “교육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RC** 는 이러한 재정 지원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ally** 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교육 서비스로 간주되더라도 **Sally** 는 교육 서비스 유료 이용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서비스가 **Sally** 의 장애에 따른 영향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며 그 어떤 대안적인 공급원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RC** 는 **Sally X** 에 대한 교육 상담 서비스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제출자:

Bill X

Sally X 의 아버지

날짜: